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30호 2023. 7. 26.(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229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3-2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
 광양시 고시 제2023-2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1627호 2023년 2/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공고 5
 광양시 공고 제2023-1637호 광양 상황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공고 6
 광양시 공고 제2023-1656호 광양시 도로명 부여 공고 7

조 례

광양시 조례 제2039호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광양시 조례 제2040호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19
 광양시 조례 제2041호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5
 광양시 조례 제2042호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광양시 조례 제2043호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광양시 조례 제2044호 광양시 자연파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회									
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26.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2길 5 외 1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7.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2 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829-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2길 5	20230726	20081001	옛 관아 서쪽 들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161, 160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1길 70-16	20230726	20081001	법정리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수어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여수시 시청동3길 29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장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057-4
	면적	10.5㎡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수어댐 홍수경보시설 설치
점용기간		2023. 7. 24. ~ 2027. 12. 30.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광 양 시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수어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중등로 20
	성명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1593
	면적	1㎡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한전주 설치
점용기간		2023. 7. 25. ~ 2027. 12. 30.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 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광 양 시



1. 공고내용 : 2023년 2/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신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3. 7. 24.~ 2024. 3. 31.
3. 공고장소 : 우리시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붙임 참조). 끝.

광양 성황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공고

광양 성황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광 양 시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개요

- 사업명 : 광양 성황2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산120번지 일원
- 면적 : 97,242㎡
- 시행기간 : 2022년~2026년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제안자 : 브이산업 주식회사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공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3. 07. 21. ~ 2023. 08. 04.(14일간)
- 공람장소 : 광양시의회 4층 산단택지과(광양시 행정2길 5)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 제출내용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

5. 관계도서 및 세부 조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산단택지과 (☎061-797-3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로명 부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26.

광 양 시 장

1. 공고기간: 2023. 7. 26. ~ 8. 10. (15일간)
2. 공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도로명 부여 2건(붙임 조서 참조)
4. 의견제출 기간: 공고 기간 내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 서식 작성 제출(시청 민원지적과 비치)
6. 도로명 부여 절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도로명주소팀 ☎ 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 상

□ 도로명 부여

연번	예 비 도로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 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무선1길	길	광양읍	광양읍 덕례리 678-4	광양읍 덕례리 570-8	도면 참조	496	25	20	1	50	도시계획도로 내 편입된 자연마을 지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2	무선2길	길	광양읍	광양읍 덕례리 205-4	광양읍 덕례리 570-8	도면 참조	276	20	20	1	28		

□ 현황도면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7. 20.)에서 의결된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2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39호

붙 임 :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청구주민 수 등)”을“(청구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9세”를 “18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청구인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와 제3-1호의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제2호 중 “재판 중에 있거나”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토론청구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시민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항

제6조의 제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외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구인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
2. 토론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
3. 토론회 개최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양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1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 약 서

본인은 () 정책토론의 청구인대표자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서명부 등을 작성한다.
2. 본인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정책토론청구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한다.
4. 본인은 서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청구서 제출 등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광양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청구주민 수 등) ① 토론회 개최청구는 그 청구일 현재 <u>19세 이상</u>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해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u>청구인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u></p> <p>제5조(청구대상) 정책토론 청구 대상은 시의 행정·재정력을 수반하는 주요정책으로 한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p> <p>1. (생략)</p> <p>2. 수사 또는 <u>재판 중에 있거나</u>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p>	<p>제4조(청구요건) ① ----- ----- <u>18세 이상</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청구인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와 제3-1호의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u></p> <p>제5조(청구대상)-----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소송이 진행 중이거나</u> ----- -----</p>

현행	개정안
<p>항</p> <p>3. ~ 4. (생략)</p> <p>5. <u>토론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회를 개최한 사항</u></p> <p>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생략)</p> <p>1. <u>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u></p> <p>2. <u>토론청구 요건</u></p> <p>3. <u>토론회 개최여부</u></p> <p>4. <u>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1. <u>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u></p> <p>2.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u></p>	<p>3. ~ 4. (현행과 같음)</p> <p>5. ----- <u>과거 6개월 이내에 시민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u></p> <p>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1. <u>청구인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u></p> <p>2. <u>토론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u></p> <p>3. <u>토론회 개최 여부</u></p> <p>4. <u>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u></p> <p>② <u>제1항에 따른 광양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광양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u></p>

현행	개정안
<p><u>하는 사람</u></p> <p><u>3. 법조인, 교육자 또는 언론인으로서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u>4. 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u></p> <p><u>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u>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u></p> <p><u>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u>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u></p> <p><u>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u></p> <p><u>2. 건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p> <p><u>3.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u></p> <p><u>4.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u></p>	<p><u><삭 제 ></u></p> <p><u><삭 제 ></u></p> <p><u><삭 제 ></u></p>

현행	개정안
<p><u>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u></p> <p>5. <u>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私的) 이익에 활용한 때</u></p> <p>6. <u>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u></p> <p>⑥ (생략)</p> <p><u>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u></p> <p>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② <u>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③ <u>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산정에</u></p>	<p>⑥ (현행과 같음)</p> <p><u>< 삭제 ></u></p>

현행	개정안
<p>서 제외한다.</p> <p>④ 위원장은 <u>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u>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 ~ 제11조 (생략)</p>	<p>제8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p>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7. 20.)에서 의결된 **광양시 디지털 광양
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2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40호

붙 임 :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와 디지털 광양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Digital)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디지털 광양시민제도”라 함은 디지털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 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와 광양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하고, 디지털 광양시민으로서 자격과 권리·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상생의 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디지털 광양시민”이라 함은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광양시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광양시민증”이라 함은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5. “디지털 광양시민 약관”이라 함은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3조(자격) 디지털 광양시민(이하 “디지털시민”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4조(등록) 디지털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디지털시민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디지털시민의 약관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광양시민제도(이하 “디지털시민제도”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디지털시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시민의 약관을 정하여 디지털시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디지털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6. 디지털시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시민 할인가맹점 확보 및 관리
8. 시와 디지털시민 간 또는 디지털시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9. 디지털시민을 대상으로 광양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혜택) ① 시장은 디지털시민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수여
2. 시 주관 문화공연·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버스투어 서비스
3.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4. 시의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
5. 디지털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디지털시민에게 기념품 등 제공
6.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2. 관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음식점·레저 등을 말한다)
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오프라인 판매시설
4. 그 밖에 디지털시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매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할인가매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매점이 디지털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디지털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광양시민 홍보단(이하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출향 향우를 포함해 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홍보단은 주요 시책 참여와 시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 ④ 시장은 홍보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홍보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무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광양시민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단의 기능·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홍보단 및 실무단의 활동 및 회의참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디지털시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 안전대책 담당자를 디지털시민제도 업무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7. 20.)에서 의결된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2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41호

붙 임 :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불용농약, 폐농약용기류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 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농업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금지
2.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영농폐기물 배출 금지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불용농약 등 처리) ① 시장은 불용농약 및 농약용기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또는 기타 공공시설 등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수거 위탁)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7. 20.)에서 의결된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2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42호

붙 임 :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의 규정을”을 “사항을 규정함을”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을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을 요
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12조 중 “재난업무 담당”을 “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u>사항의 규정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사항을 규정함을</u> -----.</p>
<p>제2조(기능)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p>1. (생략)</p> <p>2. <u>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u></p> <p>3. <u>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u></p> <p>4. ~ 5. (생략)</p> <p>6. <u>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u></p>	<p>제2조(기능)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u>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u></p> <p>3. <u>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u>----- -----</p> <p>4.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p>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를</u> 시장이 위촉한다.</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해당하는 사람을</u> ----- -----.</p>

1. (생략)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생략)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생략)

제4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1. ~3. (생략)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1. (현행과 같음)

2. -----

(-----
----- 사람)

3. (현행과 같음)

4. -----
----- 사람 -----
-----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① -----

-----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②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제6조(자문단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회의일시, 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도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긴급하거나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

----- 그 밖의 -----
-----.

② ----- 긴급하
거나 -----

-----.

제13조(간사와 서기) -----

----- 담당팀
장-----.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7. 20.)에서 의결된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2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43호

붙 임 :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법 제3조제1호다목”을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제6조제1호마목”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회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 「지방회계법」 제38조----- ----- -----</p>
<p>제6조(기금의 용도) (생략)</p> <p>1.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사. (생략)</p> <p>2. <u>법 제3조제1호다목</u>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p> <p>3.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략)</p>	<p>제6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사.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3조제1호나목</u>----- ----- -----</p> <p>3.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시장은 <u>영제74조제1호마목</u>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 <u>제 6 조 제 1 호 마 목</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p>

<p>• 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회에서</u>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광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자</u></p> <p>2. ~ 4. (생략)</p> <p>⑤ ~ ⑦ (생략)</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위원 중에서</u> ----- -----.</p> <p>④ ----- ----- <u>사람</u> ----- -----.</p> <p>1. <u>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	--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 7. 20.)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월 2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44호

붙임 :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지진·화산재해대책법」</u>----- ----- ----- -----</p>
<p>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 ④ (생략) ⑤ (생략)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 ~ 3. (생략) ⑥ ~ ⑦ (생략)</p>	<p>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u>건설기술진흥법</u>」----- ----- ----- ----- 2. ~ 3.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략)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p>	<p>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p>

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
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
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 「실내공기질관리법」 -----

③ ~ ④ (현행과 같음)